



(사)한국독성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2026. 2. 2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성학회 학술지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저자자격)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한 모든 저자(공동저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저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부당한 저자로 간주한다.

1. 연구의 개념 및 설계 또는 자료의 생성,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것
2. 논문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학문적 내용의 비판적 수정에 참여하였을 것
3.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게재에 동의하였을 것
4.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문장, 도표 등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 (구성)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본 학회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실행위원장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의혹은 제보, 편집위원회의 판단, 심사 과정 또는 외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제기될 수 있다. 제보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3조 (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5장 본 조사

제16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 하여 30일간의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관련 분야의 학회 임원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학술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필요시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 4) 조사결과
 -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6장 판정 및 조치

제20조 (판정)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심의)

1.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중대성 및 고의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한다.

1. 논문 철회: 위조, 변조, 중대한 표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이 확인된 경우
2. 논문 수정(Errotum): 일부 오류가 있으나 연구의 핵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논문 투고 제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 시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7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23조 (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후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Publishing ethics of Toxicological Research

Researchers should conduct their research from research proposal to publication in line with best practices and codes of conduct of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and/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bodies.

1. Ethical responsibilities of authors

This journal is committed to upholding the integrity of the scientific record. This journal will follow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acts of misconduct.

Authors should refrain from misrepresenting research results which could damage the trust in the journal, the professionalism of scientific authorship, and ultimately the entire scientific endeavor.

Maintaining integrity of the research and its presentation can be achieved by following the rules of good scientific practice, which include:

- ♦ The manuscript has not been submitted to more than one journal for simultaneous consideration.
- ♦ The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partly or in full), unless the new work concerns an expansion of previous work (please provide transparency on the re-use of material to avoid the hint of text-recycling ('self-plagiarism')).
- ♦ A single study is not split up into several part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submissions and submitted to various journals or to one journal over time.
- ♦ No data have been fabricated or manipulated (including images) to support your conclusions.
- ♦ No data, text, or theories by others are presented as if they were the author's own ('plagiarism'). Proper acknowledgements to other works must be given (this includes material that is closely copied (near verbatim), summarized and/or paraphrased), quotation marks are used for verbatim copying of material, and permissions are secured for material that is copyrighted.
- ♦ Important note: the journal may use software to screen for plagiarism.
- ♦ Consent to submit has been received explicitly from all co-authors, as well as from the responsible authorities - tacitly or explicitly - at the institute/organization where the work has been carried out, before the work is submitted.
- ♦ Authors whose names appear on the submission have contributed sufficiently to the scientific work and therefore share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s.
- ♦ Authors are strongly advised to ensure the correct author group, corresponding author, and order of authors at submission. Changes of authorship or in the order of authors are

not accepted after acceptance of a manuscript.

- ♦ Adding and/or deleting authors at revision stage may be justifiably warranted. A letter must accompany the revised manuscript to explain the role of the added and/or deleted author(s). Further documentation may be required to support your request.
- ♦ Requests for addition or removal of authors as a result of authorship disputes after acceptance are honored after formal notification by the institute or independent body and/or when there is agreement between all authors.
- ♦ Upon request authors should be prepared to send relevant documentation or data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is could be in the form of raw data, samples, records, etc. Sensitive information in the form of confidential or proprietary data is excluded.

If there is a suspicion of misconduct, the journal will carry out an investigation following the COPE guidelines. If, after investigation, the allegation seems to raise valid concerns, the accused author will be contacted and given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issue. If misconduc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is may result in the Editor-in-Chief's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 If the article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it may be rejected and returned to the author.
- ♦ If the article has already been published online,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infraction, either an erratum will be placed with the article or in severe cases retraction of the article will occur. The reason must be given in the published erratum or retraction note. Please note that retraction means that the paper is maintained on the platform, watermarked "retracted" and explanation for the retraction is provided in a note linked to the watermarked article.
- ♦ The author's institution may be informed.

2. Compliance with ethical standards

To ens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research and to ensure that accepted principles of ethical and professional conduct have been followed, authors should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sources of funding,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financial or non-financial), informed consent if the research involved human participants, and a statement on welfare of animals if the research involved animals.

Authors must include th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sources of funding (if applicable) in a separate section entitled "Conflict of interest" or "Acknowledgements", respectively, before the References when submitting a paper: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prepare to collect documentation of compliance with ethical standards and send if requested during peer review or after publication.

The Editors reserve the right to reject manuscript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above-

mentioned guidelines. The author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false statements or failure to fulfill the abovementioned guidelines.

2-1.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uthors must disclose all relationships or interests that could have direct or potential influence or impart bias on the work. Although an author may not feel there is any conflict, disclosure of relationships and interests provides a more complete and transparent process, leading to an accurate and objective assessment of the work.

Awareness of a real or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is a perspective to which the readers are entitled. This is not meant to imply that a financial relationship with an organization that sponsored the research or compensation received for consultancy work is inappropriate.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earch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 Research grants from funding agencies (please give the research funder and the grant number)
- ♦ Honoraria for speaking at symposia
- ♦ Financial support for attending symposia
- ♦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al programs
- ♦ Employment or consultation
- ♦ Support from a project sponsor
- ♦ Position on advisory board or board of directors or other type of management relationships
- ♦ Multiple affiliations
- ♦ Financial relationships, for example equity ownership or investment interest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g. patents, copyrights and royalties from such rights)
- ♦ Holdings of spouse and/or children that may have financial interest in the work

In addition, interests that go beyond financial interests and compensation (nonfinancial interests) that may be important to readers should be disclosed. Thes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ersonal relationships or competing interests directly or indirectly tied to this research, or professional interests or personal beliefs that may influence your research.

The corresponding author collects the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forms from all authors. In author collaborations where formal agreements for representation allow it, it is sufficient for the corresponding author to sign the disclosure form on behalf of all authors.

2-2.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and/or animals

1) Statement of Human Rights

When reporting studies that involve human participants, authors should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studies have been approved by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nd/or na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have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standards as laid down in the 1964 Declaration of Helsinki and its later amendments or comparable ethical standards.

If doubt exists whether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1964 Helsinki Declaration or comparable standards, the authors must explain the reasons for their approach, and demonstrate that the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plicitly approved the doubtful aspec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tate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text of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All procedures wer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on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 Statement on the Welfare of Animals

The welfare of animals used for research must be respected. When reporting experiments on animals, authors should indicate whether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or institutional guidelines for the care and use of animals have been followed, and that the studies have been approved by a research ethics committee at the institution or practice at which the studies were conducted (where such a committee exists).

For studies with animals, the following stat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text of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All procedures wer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for the care and use of animals."

3) Informed consent

All individuals have individual rights that are not to be infringed. Individual participants in studies have, for example, the right to decide what happens to the (identifiable) personal data gathered, to what they have said during a study or an interview, as well as to any photograph that was taken.

Hence it is important that all participants gave their informed consent in writing prior to inclusion in the study. Identifying details (names, dates of birth, identity numbers and other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that were studied should not be published in written descriptions, photographs, and genetic profiles unless th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scientific purposes and the participant (or parent or guardian if the participant is incapable) gave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Complete anonymity is difficult to achieve in some cases, and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if there is any doubt.

For example, masking the eye region in photographs of participants is inadequate protection of anonymity. I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re altered to protect anonymity, such as in genetic profiles, authors should provide assurance that alterations do not distort scientific meaning.

The following statement should be included: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subjects.”

3. Appeals and complaints

The below procedure applies to appeals to editorial decisions, complaints about failure of processes such as long delays in handling papers and complaints about publication ethics. The complaint should in first instance be handled by the Editor-in-Chief(s) responsible for the journal and/or the Editor who handled the paper.

Complaint about scientific content, e.g. an appeal against rejection

The Editor-in-Chief or Handling Editor considers the authors' argument, the reviewer reports and decides whether

- The decision to reject should stand;
- Another independent opinion is required
- The appeal should be considered.

The complainant is informed of the decision with an explanation if appropriate.

Decisions on appeals are final and new submissions take priority over appeals.

Complaint about processes, e.g. time taken to review

The Editor-in-Chief together with the Handling Editor (where appropriate) and/or in-house contact (where appropriate) will investigate the matter. The complainant will be given appropriate feedback. Feedback is provided to relevant stakeholders to improve processes and procedures.

Complaint about publication ethics, e.g., researcher's author's, or reviewer's conduct

The Editor-in-Chief or Handling Editor follows guidelines published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of Springer-Nature. The Editor-in-Chief or Handling Editor may ask the publisher via their in-house contact for advice on difficult or complicated cases. The Editor-in-Chief or Handling Editor decides on a course of action and provides feedback to the complainant. If the complainant remains dissatisfied with the handling of their complaint, he or she can submit the complaint to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of Springer-Nature.



(사)한국독성학회 연구윤리규정

2008. 1. 1 제정

2026. 2.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성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독성전문가 자격 등 학회의 연구 윤리 운영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저자자격)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논문 혹은 초록 등에 발표한 모든 저자에게 적용되며, 저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부당한 저자로 간주한다.

1. 연구의 개념 및 설계 또는 자료의 생성, 분석,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것
2. 논문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학문적 내용의 비판적 수정에 참여하였을 것
3.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게재에 동의하였을 것
4.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문장, 도표 등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1. 본 학회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실행위원장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의혹은 제보, 실행위원회의 판단, 심사 과정 또는 외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제기될 수 있다. 제보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3조 (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실행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5장 본 조사

제16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2.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 하여 30일간의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실행위원장 및 관련 분야의 학회 임원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필요시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 4) 조사결과
 -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6장 판정 및 조치

제20조 (판정)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의 징계를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심의)

1.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중대성 및 고의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한다.

1. 논문/초록 철회: 위조, 변조, 중대한 표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이 확인된 경우
2. 논문/초록 수정(Errotum): 일부 오류가 있으나 연구의 핵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논문/초록 투고 제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논문/초록의 책임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 시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학술대회 발표 철회
6. 독성전문가 자격 정지 또는 취소
7.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8.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7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23조 (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 5년간 보관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후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